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[별지 제2호서식] <개정 2026. 10. 1.>

친권상실의 선고 등 청구 요청 처리 결과 통보서

우편번호/ 주소 /전화번호 /전송

제 0000-0000 호 0000. 00. 00.

수 신: ○○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 발 신: ○○지방공소청장(지청장)

검 사 (서명 또는 인)

제 목: **친권상실의 선고 등 청구 요청 처리 결과 통보**

「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9조제2항에 따른 []친권상실의 선고 청구 요청 또는 []후견인의 변경 심판 청구 요청의 처리 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.

<table>
<tr><td rowspan="2">아동학대 행위자</td><td>성 명</td><td colspan="2"></td><td>피해아동과의 관계</td><td></td></tr>
<tr><td>생년월일(나이)</td><td colspan="4">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피해아동</td><td colspan="4"></td></tr>
<tr><td>요청내용</td><td colspan="5"></td></tr>
<tr><td rowspan="2">처리결과</td><td>[]</td><td colspan="2">친권상실의 선고 청구</td><td colspan="2" rowspan="2">[] 청구하지 아니함</td></tr>
<tr><td>[]</td><td colspan="2">후견인의 변경 심판 청구</td></tr>
<tr><td>청구한 경우 사건번호</td><td colspan="5"></td></tr>
<tr><td rowspan="6">청구하지 아니하는 이유</td><td>[]</td><td colspan="4">피해아동이 성년에 이른 경우</td></tr>
<tr><td>[]</td><td colspan="4">피해아동이 성년에 가까워졌고, 아동학대행위자의 실질적인 보호·교양에서 벗어난 경우</td></tr>
<tr><td>[]</td><td colspan="4">검사 이외의 사람이 이미 친권상실의 선고 청구, 후견인의 변경 심판 청구를 한 경우</td></tr>
<tr><td>[]</td><td colspan="4">아동학대행위자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미성년후견인을 사임한 경우</td></tr>
<tr><td>[]</td><td colspan="4">아동학대행위자의 사망 또는 소재불명 등으로 인하여 친권상실의 선고 청구 또는 후견인의 변경 심판 청구를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</td></tr>
<tr><td>[]</td><td colspan="4">기타 사유:</td></tr>
</table>

210㎜×297㎜[백상지 80g/㎡(재활용품)]